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1996.6.20>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0조제1항관련)

구분	보안물건의 종류 및 보안거리				저장화약류의 수량	
	제 1 종 보안물건	제 2 종 보안물건	제 3 종 보안물건	제 4 종 보안물건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1 급저장소 · 2 급저장소 또는 실탄저장소	550	480	270	170	폭약 40톤 (이하)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무제한
	520	460	260	160	35	
	500	440	250	160	30	
	470	410	230	150	25	
	440	380	220	140	20	
	430	370	210	130	19	
	420	370	210	130	18	
	420	360	210	130	17	
	410	350	200	130	16	
	400	350	200	120	15	
	390	340	190	120	14	
	380	330	190	120	13	
	370	320	180	110	12	
	360	310	180	110	11	
	340	300	170	110	10	
	330	290	170	100	9	
	320	280	160	100	8	
	310	270	150	95	7	
	290	250	150	90	6	
	280	240	140	85	5	
	260	220	130	80	4	
	230	200	120	70	3	
	200	180	100	60	2	
실탄저장소	160	140	80	50	1	
	140	120	70	45	0.7	
	130	110	65	40	0.5	
	110	95	55	35	0.3	
수중저장소	200	200	100	100	200	
	100	100	50	50	50	

3 급 저 장 소	10	10	10	10	폭약 25kg 이하, 화약 50kg 이하,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및 신호뇌 관 10만개 이하, 총용 뇌관 10만 개 이하, 실 탄 및 공포 탄 6만개 이하, 도폭 선 1,500미 터 이하, 신 관·화관 3만 개 이하	도 화 선 및 전 기 도 화 선 무 제 한
꽃 불 류 저 장 소	150	110	75	35	화약 또는 폭약 2,000 kg 이하	도 화 선 및 전 기 도 화 선 무 제 한
	140	100	70	35	1,700	
	130	100	65	35	1,400	
	120	90	60	30	1,100	
	110	85	55	30	800	
	100	80	50	25	700	
	90	70	45	20	500	
	80	60	40	20	300	
장 난 감 용 꽃 불 류 저 장 소	7	7	7	7	2,000	
도 화 선 저 장 소	5	5	5	5		도 화 선 및 전 기 도 화 선 무 제 한